Citibank

citi

추 가 약 정 서

(무역어음대출용)

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20 년 월 일

인감대조

본 인 ㊞

주 소

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(이하 "은행" 이라고 한다)과의 무역어음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체결한 년 월 일자 여신한도거래약정서(이하 "원 약정서" 라 한다)에 추가하여 다음사항을 약정합니다.

제 1 조 (대출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 등)

① 대출이자율, 지연배상금율 등은 "원약정서" 및 "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"을 적용 하기로 합니다.

②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아래의 납입방법중 선택하기로 합니다.

1. □ 대출 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 한다.(만기일괄선취방식)
2. □ 최초 이자는 대출실행일에, 익월 해당일까지 선지급하고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단위로 선지급 합니다.(매월 선취 방식)
3. □ 최초이자는 대출실행일의 익월 해당일에 지급하며,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최종계산일의 익일부터 1개월 단위로 후지급 합니다.(매월 후취 방식)

다만, 상기 제1호 또는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는 본인 의사확인을 위하여 동 선택방식을 기입키로 합니다.

(예 : 만기일괄선취방식에 동의 합니다 또는 매월선취방식에 동의 합니다.)

제 2 조 (효력)

이 약정서, 원약정서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하고, 다음으로 원약정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의 순서로 적용됩니다.

제 3 조 (기타 특약사항) 본 인 : (인)

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.

본 인 : (인)